

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 안내

1. 신고대상

- 방위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,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

[방위사업]

- 방위력개선사업 :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
- 전력운영사업 : 방위사업청이 국방전자조달에 발주한 각군 군수품 중앙조달
 - * 각군에서 직접 발주한 군수품 부대조달 계약 및 군수품 납품 조달청 계약관련 부패행위는 각군 헌병대로 신고
- 기타 : 방산물자 및 군수품 관련 수출입에 관한 사항

- 방위사업청 공무원 및 소속·출연기관 임직원 부패행위, 갑질행위, 직권남용 행위
-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
- 공금 횡령, 금품·향응 수수
- 방위사업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, 공정한 입찰·계약질서 훼손행위
- 국방R&D 관련 비위행위(금품수수, 개발결과 조작·위조 등)
 - *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개발 사업, 핵심기술사업, 미래도전기술사업, 부품 국산화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,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

2. 신고 관련 확인·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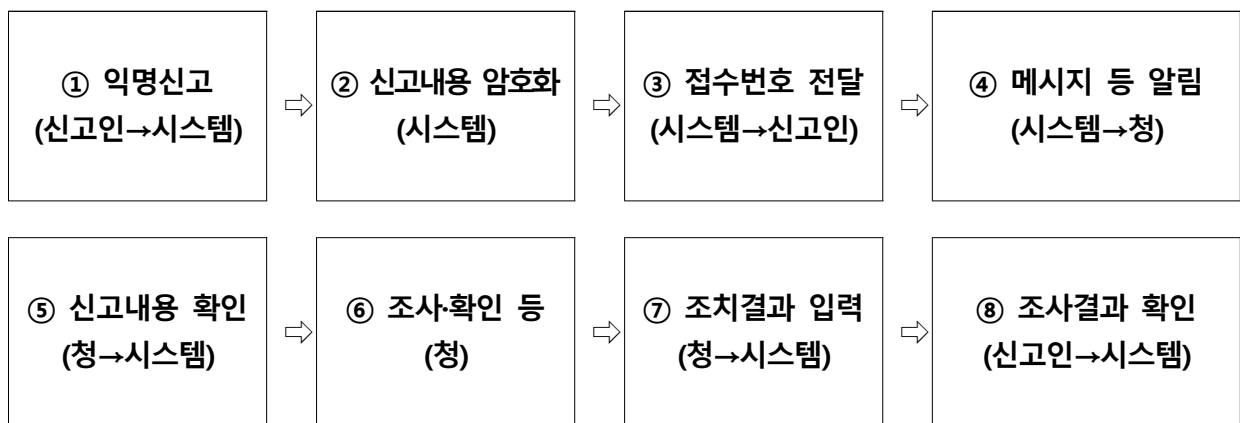
-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대상 해당 여부 사전 확인
 - * 신고 비대상 : 행정상 단순 실수,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·답변,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, 단순 질의 등
- 신고서는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
- 신고서 작성 간 가급적 구체적 증빙 서류 및 확인 방법 등 자료 첨부
- 신고서 제목·내용·첨부분서 등에 작성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추측 가능한 내용은 배제
- 근거없는 타인 비방이나 음해 등의 내용은 접수/처리되지 않음

3. 신고방법

- 관련기관* 홈페이지 접속 → “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” 배너 클릭
→ “익명신고센터” 클릭 후 신고서 작성

* 방위사업청, 국방과학연구소, 국방기술품질원,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한국방위산업진흥회

4. 신고 처리절차



※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서 위탁·관리 운영하고 있으며, 신고자의 동의없는 정보(IP정보, 연락처, 성명)는 일체 기록되거나 추적되지 않습니다.